#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26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김용만・이인영・강준현

박상혁 · 조승래 · 이정문

염태영 · 천준호 · 정춘생

민병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경보(등급: 주의)를 발령한 바 있으며,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22년 136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

법률 제 호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호"를 "제13호카목,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사목 중 "경우"를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      |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 |
| 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           |                     |
| 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                     |
|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                     |
|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                     |
|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                     |
|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      |                     |
|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         |                     |
|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
| 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                     |
| <u>제15호</u> 또는 제16호에 해당하 | 제13호카목, 제15호        |
|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                     |
| 여야 한다.                   |                     |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 13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경우                       |                     |
| 가. ~ 바. (생 략)            | 가. ~ 바. (현행과 같음)    |
|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 사                   |
|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                     |
| <u>경우</u>                |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       |
|                          | 우는 제외한다)            |

아. ~ 차. (생 략) <u><신 설></u>

14. ~ 16. (생 략)

② ~ ⑥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카.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반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